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사항 (제8편 방화 및 소화)

2019. 12.



(사)한국선급

2020.01.01.일자 시행사항

- (1) 건조일 또는 이와 동등한 단계 기준
 - IMO Res.MSC.409(97)), Res.MSC.404(96)), Res.MSC.421(98)) 개정사항 반영

제 8 장 소화

제 4 절 기관구역의 소화장치

- 401. 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가 있는 기관구역 【지침 참조】
 - 1 고정식 소화장치

〈생략〉

- 2. 추가의 소화장치
- (1) 〈생략〉
- (2) 각 보일러실의 각 점화장소 및 연료유설비가 있는 각 장소에는 휴대식포말소화기를 최소 2개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각 보일러실에 승인된 135 L 이상의 포말소화기 또는 이에 동등물 1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며호스를 적절히 릴에 감아서 보일러실 어느 부분에도 도달하도록 한다. 다만, 선내 보일러가 175 kW 미만인 경우 승인된 135 L 포말소화기는 요구되지 않는다.
- (3) 〈생략〉

제 11 장 헬리콥터 설비 제 1 절 적용

101. 적용

- 1. 추가사항으로 헬기갑판을 설치한 선박은 이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헬기갑판이 없는 선박에서 임시나 비상시 헬리콥터 착륙하거나 권양작업을 하는 경우 5장부터 9장에 따라 설치된 소방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헬리콥터 작동 동안 착륙장소나 권양장소 부근에서 이 설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3. 〈신설〉
- 3.2항에도 불구하고, 헬기갑판이 없는 로로여객선은 SOLAS <u>관련 규정</u>에 따른다. 【지침 참조】

제 8 장 소화

제 4 절 기관구역의 소화장치

- 401. 기름보일러 또는 연료유장치가 있는 기관구역 【지침 참조】
- 1. 고정식 소화장치

〈생략〉

- 2. 추가의 소화장치
- (1) 〈생략〉
- (2) 각 보일러실의 각 점화장소 및 연료유설비가 있는 각 장소에는 휴대식포말소화기를 최소 2개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각 보일러실에 승인된 135 L 이상의 포말소화기 또는 이에 동등물 1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며호스를 적절히 릴에 감아서 보일러실 어느 부분에도 도달하도록 한다. 다만, 선내 보일러가 175 kW 미만이거나 406.의 고정식 물소화장치로 보호되는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승인된 135 L 포말소화기는 요구되지 않는다.(2020)
- (3) 〈생략〉

제 11 장 헬리콥터 설비 제 1 절 적용

101. 적용

- 1. 추가사항으로 헬기갑판을 설치한 선박은 이 장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2. 헬기갑판이 없는 선박에서 임시나 비상시 헬리콥터 착륙하거나 권양작업을 하는 경우 5장부터 9장에 따라 설치된 소방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헬리콥터 작동 동안 착륙장소나 권양장소 부근에서 이 설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3. 2항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착륙구역이 있는 선박은 FSS 코드 17장에 적합한 포말소화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2020)
- <u>4. 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u> 헬기갑판이 없는 로로여객선은 SOLAS <u>Ⅲ/28 규칙</u>에 에 따른다. *(2020)* 【지침 참조】

혂 했

제 4 절 소화설비

401. 소화설비

- 1. ~ 2. 〈생략〉
- 3. 헬리콥터가 운항할 수 있는 모든 기상조건하에서 헬기갑판 전체에 포말을 방출 할 수 있도록 구섯된 모니터나 포맘지관의 포맘방출장치 또한 아래 표에서 요 구하는 방출률로 적어도 5분 동안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u>분류</u>	헬리콥터 전장	포말용액 방출률(L/min)
<u>H1</u>	<u>15 m 미만</u>	<u>250</u>
<u>H2</u>	15 m 이상 24 m 미만	<u>500</u>
<u>H3</u>	24 m 이상 35 m 미만	800

- 4. 주매체액은 해수와의 사용에 적합하고 IMO에서 허용한 성능 기준 이상이어야! 4. 주매체액은 해수와의 사용에 적합하고 IMO에서 허용한 성능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5. 승인된 사수·분무 겸용의 노즐을 최소 2조. 헬기갑판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도록 충분한 호스
- 3. 〈신설〉

6. ~ 7. 〈생략〉

제 13 장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및 로로구역의 제 13 장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및 로로구역의 보호

제 1 절 일반요건

101 적용

추가하여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로로구역은 이 규정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다 2. 〈신설〉

개 정 안

제 4 절 소화설비

401. 소화설비

- 1 ~ 2 〈생략〉
- 3 헬리콤터가 우한할 수 있는 모든 기삿주거하에서 헬기감파 전체에 포말을 방출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모나타나 포말자관의 포말방출장치. 또한 아래 표에서 요 구하는 방출률로 적어도 5분 동안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분류	헬리콥터 전장	포말용액 방출률(L/min)
H1	15 m 미만	250
H2	15 m 이상 24 m 미만	500
H3	24 m 이상 35 m 미만	800

- 하다
- 5. 승인된 사수 분무 검용의 노즐을 최소 2조. 헬기갑판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도록 충분한 호스
- 3. 헬기갑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 FSS 코드에 적합한 포말소화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2020)*
- 4. ~ 5. 〈현행과 동일〉

보호

제 1 절 일반요건

101. 적용

- 추가하여 차량구역, 특수분류구역, 로로구역은 이 규정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 다
- 2 모든 선박에서 자가추진용으로 탱크에 연료를 적재한 차량은 다음의 조건이 준 수된다면 차량, 특수분류구역 또는 로로구역 이외의 화물구역에서 운송될 수 있 다. (2020)
- (1) 화물구역 내에서의 차량 운행은 금지된다.
- (2) 화물구역이 12장의 해당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3) 운반되는 차량이 SOLAS VII/1.1에 정의된 IMDG 코드에 적합하여야 한다.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사항 (제8편 방화 및 소화)

2019. 12.



(사)한국선급

2020.01.01.일자 시행사항

- (1) 건조계약일 기준
 - IACS UI SC 288 반영
 - IACS UI SC 289 철회 반영

현 행	개 정 안	비고
현 행 제 12 장 위험물의 운송 제 2 절 특별요건 201. 특별요건 1. ~ 3. 〈생략〉 4. 통풍장치 (1) ~ (3) 〈생략〉 (4) 〈신설〉	제 12 장 위험물의 운송 제 2 절 특별요건 201. 특별요건 1. ~ 3. 〈현행과 동일〉 4. 통풍장치 (1) ~ (3) 〈현행과 동일〉 (4) 표 8.12.1의 비고 1에 따라 경감된 환기횟수는 컨테이너 화물구역 내에 별지펌프를 직접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규칙 201.의 4항 (1)호 및 규칙 201.의 5항 (4)호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여러 컨테이너 화물구역용으로 한 대의 별지펌프가 설치될 경우에는 컨테이너 화물구역 중 통풍효율이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020)	(개정) - IACS UI SC288 반영 : 규칙 201.의 4항 (1)호 및 규칙 201.의 5항 (4)호에도 불구하고 환기횟수 시간당 2회를 적용함

했 개 정 비고 혅 아 부록 8-5 불활성가스장치 부록 8-5 불확성가스장치 1. 〈생략〉 1. 〈생략〉 2. 일반 요건 2. 일반 요건 (1) ~ (9) 〈생략〉 (1) ~ (9) 〈생략〉 (10) 불활성가스 관 (10) 불활성가스 관 (가)~(다) 〈생략〉 (가) ~ (다) 〈생략〉 (a) ~ (b) 〈생략〉 (a) ~ (b) 〈생략〉 (개정) (c) 우리 선급이 동등하다고 인정한 장치, 다음의 배치는 동 (c) 우리 선급이 동등하다고 인정한 장치, 다음의 배치는 동 - IACS ULSC289 철회 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림 부록 8-51 참조) (2019) 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림 부록 8-51 참조) (2019) 반영 (i) 안전한 방식으로 밸브 사이의 공간을 벤트시키는 배치 (i) 안전한 방식으로 밸브 사이의 공간을 베트시키는 배치 를 갖는 연속된 2개의 차단밸브 를 갖는 연속된 2개의 차단밸브 (ii) 안전한 방식으로 밸브와 스펙터클 플랜지 사이의 공간 (ii) 안전한 방식으로 밸브와 스펙터클 플랜지 사이의 공간 을 벤트시키는 배치를 갖는 차단밸브와 스펙터클 플랜 을 밴트시키는 배치를 갖는 차단밸브와 스펙터클 플래 지 귀 (iii) 금속성 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하는 것은 (a)에서 언급 (iii) 금속성 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하는 것은 (a)에서 언급 한 스풀피스와 동등한 장치로 인정되지만, 두 경우 모두 한 스풀파스와 동등한 장치로 인정되지만, 두 경우 모두 불활성가스 주관 측에 밸브를 설치하고, 화물탱크 측에 불활성가스 주관 측에 뱀브를 설치하고, 화물탱크 측에 맹플랜지 또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맹플래지 또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물맹크 화골탱크 화물탱크 화물탱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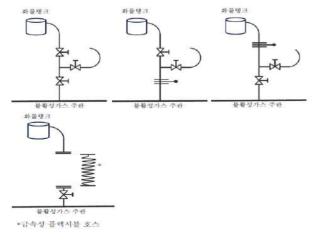


그림 부록 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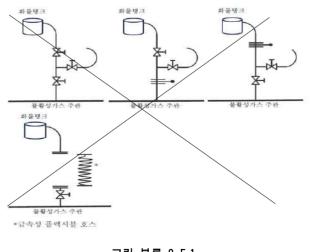


그림 부록 8-5.1